

##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중재판정의 취소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the Annulment of Arbitral Award in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몰렌츠키카 안나\*\*

Anna Molecka

김성룡\*\*\*

Sung-Ryong Kim

#### 〈목 차〉

- I. 서 론
- II. 스포츠분쟁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개요
- III.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중재판정의 취소 사례
- IV. 평가 및 시사점
- V.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스포츠중재, 관할권, 중재인, 공정성

\* 이 논문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4단계 BK21사업, 과제번호: 4299990214398)

\*\*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과정, 주저자. [anna0899@naver.com](mailto:anna0899@naver.com)

\*\*\*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대학원 무역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jackie3@knu.ac.kr](mailto:jackie3@knu.ac.kr).

## I. 서론

국제화는 과거 재화 중심의 상거래 교역에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폭넓은 분야로 교류를 확대함은 물론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국제 계약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게 하였다. 특히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까지 계약 시 고려하게 되었다.

스포츠 분야의 경우 단순히 운동이라는 개념에서 기업의 홍보 수단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국력을 나타내는 척도로까지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sup>1)</sup> 그리고 스포츠 영역의 확대와 산업화로 관련된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 내용도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sup>2)</sup> 따라서 스포츠 같은 특수한 분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야 특성에 적합한 해결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방식의 소송은 높은 비용, 절차의 유연성 부족, 비밀 유지 약속의 부재 등으로 스포츠 분쟁에서는 적합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소송보다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한다)를 이용한 방식이 적합할 수 있다. 특히 ADR 중에서도 소송처럼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중재(Arbitration)제도는 소송보다 신속하게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판사 역할을 대신하는 중재인의 분야 전문성과 절차의 자치성 및 비공개성, 경제성 등 제도적 장점으로 스포츠분쟁 해결에 적합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1984년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IOC’라 한다)는 스포츠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스위스 로잔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이하 ‘CAS’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1994년에는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 이하 ‘ICAS’라 한다)를 설립하여 CAS의 중재인을 선임하는 등 관련된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sup>3)</sup> 국내 스포츠 선수 중에도 올림픽 등 관련된 분쟁을 CAS에 신청하여 판단을 받은 바 있으며 스포츠 중재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도 관련된 전문기관의 설립을 논의하기도 하였다.<sup>4)</sup> 또한, 제도적으로는 CAS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취소도 스위스 연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 남발을 막기 위해 중재판정

1) 김용길, “ADR을 활용한 스포츠 사건의 해결에 관한 고찰-중재제도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1, p.110.

2) 김상만, “2016 리우올림픽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최근 중재판정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p.255.

3) 연기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비추어 본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의 역할과 과제”, 『스포츠와 법』, 통권 제1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p.91.

4) 김상만, 위의 논문, p.255.

의 취소 사유를 법에 열거하여 취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해주고 있다. 이는 대부분 국가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상 거부사유<sup>5)</sup>와 유사하게 자국 내 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중재와 관련된 몇몇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김상만(2016)의 연구<sup>6)</sup>는 CAS에 신청된 스포츠분쟁 사례연구를 통해 중재 적합성과 국내 독립된 스포츠 중재기구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스포츠 중재재판부 설치를 통한 스포츠 중재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김용섭(2016)의 연구<sup>7)</sup>는 CAS의 분쟁해결 절차 및 불복절차에 관하여 분석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독일 빙상선수의 도핑사례와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CAS의 절차를 설명하였고 법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손창주<sup>8)</sup>의 연구는 CAS의 분쟁해결방법을 분석하였고 공정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기관의 당면 문제점을 분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끝으로 전홍구<sup>9)</sup>의 연구는 스포츠분쟁과 스포츠자치,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데 중재 제도의 적합성을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밖에 여러 학자에 의해 스포츠분쟁의 특성과 중재 제도 활용의 필요성 및 국내 관련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가 분쟁 처리 절차를 주관하는 CAS의 중재규칙 및 기관에 관한 분석, 도핑 등 특정 사례 분석을 통한 중재 적합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에 CAS 중재판정에 대한 스위스 연방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인 분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AS 중재판정에 대한 스위스 연방법원의 판정 취소 사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CAS의 중재판정이 스위스 연방법원에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도 극히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중재인의 공정성과 중재합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판정이 취소된 본 연구의 사례는 중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중재의 실무 대응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세부적으로는 인종차별에 따른 중재인 공정성 문제가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편이라 스포츠 분야를 넘어 중재인 관리 등 대한민국 중재 제도 발전을 위해서라도 주의

5)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집행거부사유는 1)행위능력 결여 또는 중재합의 무효, 2)방어권의 침해, 3)판정이 중재 합의 범위 벗어난 경우, 4) 중재절차 하자, 5) 구속력 발생이 안 된 중재판정, 6) 공공질서 위반 등

6) 김상만, 앞의 논문 pp.253-278.

7) 김용섭,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독일 빙상선수 Claudia Pechstein의 도핑사례 분석을 곁하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6, pp.91-116.

8) 손창주, “스포츠분쟁해결기구로서의 스포츠중재재판소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8, pp.43-75.

9) 전홍구, “스포츠중재의 필요성과 중재합의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6, pp.3-27.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가 스포츠 중재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II. 스포츠분쟁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개요

### 1. 국제 스포츠 분쟁의 특징

스포츠 분쟁의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경기 도중 발생한 분쟁과 경기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경기 외적 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0)</sup> 또한, 선수와 감독 사이 등 스포츠관계자 간의 분쟁 및 스포츠관계자와 일반인 사이의 분쟁으로도 나눌 수 있다. 스포츠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선수 선발 등 관련된 분쟁이나 심판에 대한 분쟁, 스포츠 단체와 관련된 분쟁, 금지약물 복용에 관한 분쟁, 스포츠 계약 관련 분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1)</sup>

스포츠 분쟁의 유형이나 대상, 발생원인 등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들 중 스포츠분쟁에 대한 특징 몇 가지를 요약해 보자면 첫째, 스포츠는 국가 단위로 성장한 것이 아닌 각종 스포츠 단체 등 민간 영역에서 발전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분쟁의 본질은 사적 분쟁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스포츠는 공정한 경기를 통해 우열을 가리는 것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경기가 마무리되기 전 또는 경기가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스포츠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자가 참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공정성을 높일 수 있어 중요하다.<sup>12)</sup> 따라서 이와 같은 스포츠분쟁의 특징을 고려해본다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법원의 소송보다 중재를 중심으로 ADR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스포츠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중재를 비롯한 ADR 제도는 법원의 재판 외 분쟁 해결수단으로 분쟁당사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을 도모한다는 장점이 있다.<sup>13)</sup> 단순히 분쟁당사자 사이에 이기고 지는 문제를 넘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ADR은 앞에서 언급한 중재를 비롯하여 조정, 알선, 협상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여러 분야에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간 자율 의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분쟁 해결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중재는 단심제이고 경제성과 신속성의 장점이 있으며 중재인의 전문성으로 스포츠분쟁의 실정을

10) 전홍구, 앞의 논문, p.5.

11) 지철호, “ADR을 통한 스포츠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p.18-20.

12) 지철호, 위의 논문, p.25, 김상만, 앞의 논문, p.257.

13) 김용섭, 앞의 논문, p.94.

이해하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끝으로 절차 비공개성으로 관련된 업무의 비밀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스포츠분쟁 처리에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ADR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 결과 CAS가 국제스포츠분쟁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 2.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기능 및 역할

1980년대 국제스포츠분쟁이 증가하면서 구속력을 가진 분쟁 해결 조직의 설립이 필요로 하였고 IOC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 중재 기관의 설립을 추진하였다.<sup>14)</sup> 기관 위치는 중립 지역인 스위스 로잔에 두었고 스위스 연방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취소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스위스 연방 규칙에 있는 제한된 조건에 부합해야만 가능하다.<sup>15)16)</sup>

CAS의 분쟁해결시스템을 살펴보면, 일반, 항소, 임시중재부 등으로 구성된다. 1994년 일반중재부(Ordinary Arbitration Division)와 항소중재부(Appeals Arbitration Division)를 설치하였고, 1999년 중재 규칙의 개정을 통해 중재 이외에 조정절차까지 포함하였다.<sup>17)</sup>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임시중재부(Ad hoc Arbitration Division)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핑 문제만 별도로 다룰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절차를 만들기까지 하였다.

CAS에 신청되는 분쟁 사건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상업적 목적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스폰서나 중계권, 초상권, 프로 계약, 선수 이적이나 고용 및 대리(agency) 계약 등이며 두 번째는 징계 성격을 가진 것으로 도핑이나 심판의 권리 남용, 선수 폭력 등이 해당한다.<sup>18)</sup> 그중에서 일반중재부는 올림픽경기 등에서 제기되는 사건이 아닌 스폰서 계약, 스포츠 중계권, 선수 이적 관련 계약, 선수 고용 계약 등 첫 번째 유형과 관련된 분쟁을 처리한다.

다음으로 항소중재부는 두 번째 유형인 징계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일차적으로 협회나 연맹, 관련 단체 등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절차를 다루는 곳이다. 예를 들어, 올림픽경기 등 국제대회 참가 자격 결정, IOC등 국제스포츠단체의 징계처분 등이 대상이다.<sup>19)</sup> 그밖에 CAS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한 항소 역시 CAS 중재

14) 손창주, 앞의 논문, p.45.

15) 스위스 국제사법에 관한 스위스 연방 규칙에 따르면 중재인 임명이나 중재 관할권 문제, 당사자의 동등성(equality)을 저해 또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 스위스 공공정책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16) 손창주, 앞의 논문, p.47.

17) 김상만, 앞의 논문, p.259.

18) 김대회, “국내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설치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4, p.168.

19) 강병근,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와 스포츠국제법의 과제 - 국제스포츠분쟁해결 제도를 중심으로 -”, 스포츠와 법 창간호, 2000, p.164.

규칙에서 허용하는 경우 가능하다.<sup>20)</sup>

끝으로 임시중재부는 특별히 대회 기간 중 임시로 설치되는 조직으로 예를 들어 올림픽경기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올림픽경기나 FIFA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안게임 등 개최하는 도시에 임의로 중재부를 설치하여 신속하게 관련 분쟁을 처리하도록 하였다.<sup>21)</sup> 올림픽 개막식 10일 전부터 올림픽 동안 발생한 분쟁을 처리하며 폐막식과 함께 설치가 마무리된다.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분쟁은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특별중재판정부에서 사건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sup>22)</sup> 그밖에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반도핑 중재부(Anti-Doping Division)를 설치하여 처음으로 도핑 문제만 별도로 다루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존에 금지약물 복용 여부 등 도핑 문제는 임시중재부에서 함께 처리하였는데 2016년 리우 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 기간 중 샘플 채취 및 분석, 도핑 사건에 관한 결정 권한을 반도핑 중재부에서 별도로 가지게 되었다.<sup>23)</sup>

CAS의 중재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별도의 중재인 리스트를 통해 1인 또는 3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토록 한다. CAS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 스위스 연방법원에 해당 판정의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ICAS를 CAS와 마찬가지로 스위스 로잔에 설치하고 있다. ICAS 위원은 4년 임기(중임 가능)로 선출되며 CAS의 중재인 또는 CAS에 제기된 중재 사건의 대리인을 맡을 수는 없다.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Agreement concerning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을 근거로 ICAS가 만들어졌으며 주로 스포츠 중재규칙의 제정 및 개정과 CAS 중재인 및 조정인을 임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CAS의 사무국장을 임명 및 해임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 밖에 CAS 재정 및 운영을 담당한다. 따라서 ICAS는 CAS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001년 국제육상연맹(IAAF)이 CAS의 관할권을 인정하였고 2002년 국제축구연맹(FIFA)도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 Doping Agency, 이하 'WADA'라 한다)에서 국제적 수준의 도핑 관련 분쟁에 CAS 항소심전속관할권을 규정하였다.<sup>24)</sup> 특히 도핑은 스포츠 분야에서 매우 큰 이슈이기 때문에 WADA가 중심이 되어 금지 약물 복용 등의 도핑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AS에 신청된 중재 사건을 맡게 된 중재인들은 특정 국가의 법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20) 스포츠중재규칙, 제R47조.

21) 하계올림픽의 경우 12명, 동계올림픽의 경우 9명의 중재인을 해당 도시에 배치하여 특별중재부를 운영한다.

22) Arbitration Rules for the Olympic Games, Article 2.

23) 손창주, 앞의 논문, pp.49-50.

24) 김상만, 앞의 논문, p.259.

것이 아닌 해당 종목의 스포츠 단체 경기규칙 및 법의 일반원칙 그리고 올림픽헌장 등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있다.<sup>25)</sup> CAS에 신청된 중재신청 사건은 총 8,886건으로 세부적으로는 일반중재부 1,400건, 항소중재부 7,077건, 임시중재부 149건 및 반도핑 중재부 60건의 사건이 접수된 바 있다(2021년 기준). 또한,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은데 1986년 CAS에 최초로 접수된 사건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사건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도핑 관련 중재 사건은 2016년 이전까지는 임시중재부 내에서 같이 처리하여 임시중재 사건 수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반도핑 중재부가 처음으로 설치되면서 해당 사건을 별도로 신청받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아래 표 1)과 같이 2016년을 기점으로 통계적으로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상당히 많은 도핑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만큼 스포츠분쟁에 있어 도핑이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핑은 인위적으로 약물을 투여하여 선수가 경기력을 높이려는 행위로서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심장마비 등 선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정신을 위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약물 등 금지목록을 만들어 도핑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핑 관련 분쟁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제는 물론 국내에서도 이에 관한 법률 정비가 지속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26)</sup>

표 1)의 절차별 통계 합계를 보면 항소 중재절차로 접수된 사건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데 이는 관련된 기관이나 연맹과 단체 등에 접수된 스포츠분쟁에 관한 결과에 당사자들이 승복하지 못하고 CAS의 항소 절차를 이용하여 다시 전문가 판단을 받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도별 사건 수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진행되고 분쟁이 생기면 신속하게 CAS에 신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스포츠인들 사이에 CAS의 공신력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2020년 이후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하여 해당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국제스포츠 대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기존에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짝수년도에 2년 간격으로 개최되던 기준도 일시적으로 변경이 생겼다. 따라서 표1)에서와 같이 주로 도핑까지 포함했던 임시중재부의 중재사건이 2016년 반도핑 중재부가 생기면서 그 역할이 분할되었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은 1년 연기되어 2021년 개최되었고 그런 이유에서 CAS에 접수된 중재사건 특히 반도핑 관련 절차가 2021년 상당히 증가하였다. 도핑은 공정한 스포츠 정신 및 선수 보호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에 더욱 정교한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도핑 관련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25) 김용섭, 앞의 논문, p.99.

26) 김용섭, 앞의 논문, p.112.

〈표 1〉 스포츠중재재판소 연도별 중재 사건 접수현황

구분	Ordinary Procedures	Appeal Procedures	Ad Hoc Procedures	Anti-Doping Procedures
1986	1			
1987	5			
1988	3			
1989	5			
1990	7			
1991	13			
1992	19			
1993	13			
1994	10			
1995	2	8	0	
1996	4	10	6	
1997	7	11	0	
1998	4	33	5	
1999	8	24	0	
2000	5	55	15	
2001	10	32	0	
2002	9	66	8	
2003	61	46	0	
2004	9	252	10	
2005	9	185	0	
2006	17	175	12	
2007	22	230	0	
2008	26	276	9	
2009	25	245	0	
2010	49	244	5	
2011	71	294	0	
2012	62	301	11	
2013	58	349	0	
2014	68	349	10	
2015	88	410	0	
2016	100	458	28	13
2017	111	461	0	0
2018	116	463	15	5
2019	107	493	0	5
2020	129	811	0	8
2021	147	796	15	29
Total	1,400	7,077	149	60

\* 출처 : [https://www.tas-cas.org/fileadmin/user\\_upload/CAS\\_Statistics\\_2021.pdf](https://www.tas-cas.org/fileadmin/user_upload/CAS_Statistics_2021.pdf)



### Ⅲ.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 취소 사례

#### 1. 중국 수영 선수 쑤양((Sūn Yáng) 사건

#####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0년 12월 22일 중국 수영 선수인 쑤양(Sūn Yáng)이 스위스 연방법원에 세계 반도핑 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이하 ‘WADA’라 한다)와 국제 수영 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natation amateur, 이하 ‘FINA’라 한다)을 상대로 CAS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한 내용이다.

본 사건은 2018년 9월 4일 진행된 도핑검사가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당일 국제도핑시험관리(International Doping Tests & Management, 이하 ‘IDTM’이라 한다) 도핑검사 담당자와 채혈 보조원 및 도핑검사 보조원은 샘플(Sample) 수집을 위하여 쑤양 선수의 집에 방문하였다. 당시 도핑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검사 전 선수에게 검사 관련 서류를 선수 측에 제출하였는데 도핑검사 담당자의 IDTM 신분증 사본과 FINA로부터 발급받은 검사 허가 편지, 도핑검사 보조원의 신분증 및 채혈 보조원의 간호사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쑤양 선수는 도핑검사서류(Doping Control Form)에 서명하였고 도핑검사는 평상시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2개의 혈액 표본을 채취하여 유리병에 담았고 저장 용기에 넣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채혈 표본을 수집한 이후에 도핑검사 보조원이 쑤양 선수의 사진을 찍었다. 이에 대해 쑤양 선수는 도핑검사 과정의 규칙을 벗어나는 행위라 보고 방문한 검사원들의 신분증 의문을 제기, 도핑 검사원들의 제출 서류를 재검토해볼 것을 요청하였다. 쑤양 선수는 정확한 서류 검토를 위해 선수 개인 주치의와 감독, 중국 수영 대표팀 책임자와 협의하였다. 그 결과, 검사원들이 제출한 서류는 공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러한 이유로 쑤양 선수로부터 채취한 샘플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검사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쑤양 선수는 강제로 샘플을 회수하여 해당 혈액이 담긴 병을 깨뜨렸고 검사 전 자신이 서명했던 도핑 검사 서류 역시 파기하였다.

##### (2) CAS 중재절차 및 판정 결과

이 사건 이후 도핑 검사원들은 쑤양 선수의 행동을 WADA에 신고하였고, 2019년 1월 3일 WADA는 쑤양 선수가 반도핑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FINA의 반도핑 위원회에서는 오히려 WADA의 판정을 무효화시켰다. 반도핑 위원회는 무효 판단의 근거로 선수에게 제출된 서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검사를 위한 통지 절차 역시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채혈된 표본의 효력 상실은 물론 수영 선수의 사진을 촬영한 보조원 행동의 부적절함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WADA는 FINA 반도핑 위원회의 이러한 판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고 2019년 2월 14일 CAS에 항소 절차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WADA는 CAS에 쑨양 선수에 대해 8년간 국제대회 참가 자격 정지를 요청하였다. CAS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중재판정부 중 1인으로 WADA에서 임명한 Michael J. Beloff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였는데 쑨양 선수 측에서는 선정된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AS에 접수된 스포츠 중재 사건의 중재인 선임이나 기피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ICAS에서 기피 위원회(Challenge Commission)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 결과 쑨양 선수 측의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최초 결정된 것처럼 본 사건의 중재판정부로 Michael J. Beloff, Philippe Sands 및 Franco Frattini를 의장으로 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었다. 이에 대해 쑨양 선수 측에서는 중재인 기피 관련 ICAS 기피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스위스 연방법원에 항소하였다. 다만, 해당 중재인이 추후 본 사건의 중재판정부에서 사임함으로써 해당 사안은 철회되었다.

이후 WADA가 사임한 중재인 대신 Romano Subiotto를 새로운 중재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쑨양 선수 측에서 다시 CAS에 새롭게 선정된 중재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ICAS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쑨양 선수 측의 중재인 선정과 관련된 이의 제기는 추가로 고려되지 않았고 본 사건의 심리는 2019년 11월 15일 개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수와 다른 관련자 8명의 변론이 있었으며 2020년 2월 28일 본 사건의 중재판정부에서는 쑨양 선수에 대해 유죄 판정을 내렸고 WADA의 요구처럼 8년의 국제대회 출장 정지를 결정하였다. 중재판정부의 판정 근거로 검사를 위한 통지는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는 점, 샘플 검사를 위하여 담당자와 보조원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적법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하여 쑨양 선수가 검사원들에게 보인 행동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3) 중요 쟁점 및 스위스 연방법원의 판단 결과

쑨양 선수 측은 CAS의 판정 및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본 결과에 대해 2020년 6월 15일 스위스 연방법원에 중재인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CAS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해당 근거로 2018년과 2019년 본 사건에 선임되었던 중재인 중 한 명인 Franco Frattini가 트위터(twitter)에 중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내용을 공유한 적이 있어 본 사건의 판정을 내리는데 공정성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스위스 연방법원은 판단의 근거로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고려하였다. 첫째, 중재인이 실제로 혐오스러운 게시글을 공유하였는지이다. 실제 해당 중재인은

총 7개의 게시글을 공유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동물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이 게시글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표현도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항소인이 이 내용을 알게 된 즉시 중재인에 대한 재심(Revision)을 요청하였다는 점이다. 피항소인은 항소인이 이미 중재인에 대한 조사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재심을 요청하는 시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항소인이 중재인의 게시글을 발견하기 전에 중재인이 인종차별적 성향을 보인다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았다. 셋째, 중재 과정에 참여하는 중재인은 공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사자는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재인의 편향성을 알게 되면 중재인에 대해 기피(Challenge)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중재인 Franco Frattini가 공개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실제로 인종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게시글을 중재인으로서 또는 사인으로서 공유하였는지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스위스 연방법원은 중재인의 편향적 성향이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은 입법례가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 정도의 추상적 표현으로만 규정하고 있다.<sup>27)</sup> 따라서 스포츠 분야와 같이 특수한 형태가 속한 중재기관은 중재인 기피 사유가 될 만한 잠재된 요소들을 사전에 구분해 낼 수 있어야 중재 판정이 취소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본 사건에서 스위스 연방법원은 쉐양 선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재판정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중재인 Franco Frattini에 대한 기피 신청을 인정하였으며 항소와 관련하여 피항소인은 법률 비용 7천 스위스 프랑(CHF 7,000)은 물론 항소인에게 8천 스위스 프랑(CHF 8,000)을 부담하라고 주문하였다.<sup>28)</sup>

## 2.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에 대한 사건

### (1) 사건개요

두 번째 사례는 2018년 1월 22일 스위스 연방법원에서 판결 내린 사건이다. 항소인은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이며 피항소인은 아르헨티나 축구 협회(AFA)가 허가한 축구 선수의 이전 대리인(Former Player's Agent)이다.

당사자들은 2011년 9월 1일에 독점적 대리 계약(exclusive agency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유효기간은 2013년 8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축구 선수가 얻는 수입의 10%를 보장 받는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분쟁해결 조항은 다음과 같다.

27)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p.131.

28) Swiss International Arbitration Decisions (2020) "Challenge of a CAS arbitrator for inappropriate tweets, or the "duty of curiosity" revisited" 접속일: 2023.01.25.

[https://www.swissarbitrationdecisions.com/atf-4a-318-2020?search=4A\\_318%2F2020](https://www.swissarbitrationdecisions.com/atf-4a-318-2020?search=4A_318%2F2020)

For processing and elucidation of any conflict that may arise in connection with the celebration [conclusion], interpretation, execution, and extinction of the present contract and without prejudice that can occur before national and international bodies corresponding states (AFA Dispute Resolution Organ and FIFA Players' Status Committee), based on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natural judge (Art. 18 N.C.) the parties submit to the jurisdiction and decisions of the courts of the Commercial de Capital Federal, República Argentina<sup>29)</sup>.

일방당사자인 축구 선수 A는 2011년 11월 1일 자로 201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새로운 계약을 축구팀 D와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2년 1월 12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여 1월부터 7월까지 EUR 12,500과 8월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EUR22,500을 각각 받았다. 그밖에 컴퓨터 게임에 자신의 사진 및 이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EUR 9,000의 수입을 얻었으며 대리인에게는 서면으로 2012년 12월 3일 자로 대리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축구 선수 A는 2013년 1월 30일 다른 축구팀 F와 4.5년 간 EUR 5,593,000의 봉급을 받는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에이전트 계약 당사자였던 대리인 B는 2013년 5월 20일 본인의 대리인 자격증을 아르헨티나 축구 협회(Argentinian Football Association, 이하 'AFA'라 한다)에 반납하였고, 다음 날 H 축구팀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2013년 9월 11일 대리인 B는 FIFA의 선수 지위 위원회(Players' Status Committee)에 대리 계약 종료에 따른 미지급 보수를 청구하는 이의 제기 절차를 개시하였지만, 위원회에서는 2015년 6월 30일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2) CAS 중재절차 및 판정 결과

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대리인 B는 2015년 6월 30일 선수 지위 위원회(Players' Status Committee)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CAS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CAS 중재판정부에서는 항소인의 항소에 따라 중재절차를 진행하여 FIFA의 선수 지위 위원회(Player's Status Committee)에서 내린 결정을 번복하였고, 그 결과 항소인인 대리인 B에게 2013년 9월 11일부터 5%의 이자를 포함한 559,300유로를 지급하라고 주문하였다.

29) 항소인이 제출한 번역이다. 스페인어로 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Para la tramitación y dilucidación de cualquier conflicto que pudiere suscitarse con motivo de la celebración, interpretación, ejecución y extinción de este contrato y sin perjuicio que podrán ocurrir por ante las instancias federativas nacionales e internacionales que correspondan (Órgano de Resolución de Litigios AFA y Comisión del Estatuto del Jugador FIFA en el orden internacional), con fundamento en la garantía constitucional del juez natural (art. 18 C.N. [Constitución Nacional]) las partes se someten al la jurisdicción y decisión del las tribunales ordinarios en lo Comercial de Capital Federal, República Argentina..*

### (3) 중요 쟁점 및 스위스 연방법원의 판단 결과

축구 선수 A는 CAS의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스위스 연방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CAS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취소 주장은 물론 중재합의 부존재를 근거로 CAS가 대리인 B의 항소를 심리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스위스 연방법원은 2017년 9월 28일 CAS 중재판정에 대하여 취소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는 첫째, 본 사건과 관련된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에는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아르헨티나의 상사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분쟁해결 조항에 합의된 내용만으로는 AFA와 FIFA가 명확하게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조항 내에 AFA와 FIFA 기관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 국가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고 중재 재판소에서 분쟁을 처리하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보기에에는 분명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분쟁해결조항에 기재되어 있는 AFA와 FIFA 기관 자체의 성격을 문제로 삼았다. AFA와 FIFA는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일종의 중재 재판소가 아니며 특히 분쟁해결조항에 헌법상 중립된 판사의 권리가 언급되어 있어 상사법원을 대신하여 이들 기관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았다. 끝으로 대리 계약상 분쟁해결조항에 근거하여 CAS 중재판정부는 FIFA 선수 지위 위원회(Player's Status Committee)의 관할권을 인정하였고, 항소 결정을 내렸지만, 계약서 내 분쟁해결조항에는 당사자 사이에 현존하는 또는 미래에 발생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명확한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 계약에 따른 분쟁을 오히려 법원에서 해결하겠다는 합의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대리인 B가 항소 절차를 위해 선택하였던 CAS가 본 분쟁의 판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스위스 연방법원은 축구 선수 A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2017년 7월 21일 CAS는 이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CAS의 중재판정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피항소인인 대리인 B는 법률 비용 9천 스위스 프랑(CHF 9,000) 및 항소인에게 1만 스위스 프랑(CHF 10,000)을 부담하라고 주문하였다.<sup>30)</sup>

## IV. 평가 및 시사점

첫 번째 사례는 중재인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이탈리아 출신인 중재인이 본인의 SNS에 인종차별적 내용을 공유하였다. 그래서 중국 출신인 항소인

30) Swiss International Arbitration Decisions (2018) "Exclusion of jurisdiction of state courts must be crystal clear" 접속일: 2023.01.23.

[https://www.swissarbitrationdecisions.com/atf-4a-432-2017?search=4A\\_432%2F2017](https://www.swissarbitrationdecisions.com/atf-4a-432-2017?search=4A_432%2F2017)

은 중재인의 편파적 성향으로 중재판정에 공정성을 상실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스위스 연방법원 역시 항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CAS에서 내린 중재판정을 취소하였다.

중재인은 법원의 판사와 같은 역할은 한다. 그러므로 중재인에게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요소이다. 바꾸어 말하면 중재인에게 있어서 공정성이나 독립성이 상실되었다면 기피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sup>31)</sup> 따라서 국가마다 중재법에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정성 문제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중재인이 문제 될 만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중재인 선정 시 공정성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고지의무는 UNCITRAL 모델 중재법에 규정한 이후 다른 나라들도 중재법에 입법화하고 있다.<sup>32)33)</sup>

우리나라는 중재절차 중에 중재인이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저해할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즉시 당사자들에게 고지할 것을 요구한다.<sup>34)</sup> 프랑스 법원은 중재인과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했음에도 아무런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거부를 인정하기도 하였다.<sup>35)</sup> 또한, 영국 법원은 피신청인인 철도회사의 주주가 중재인으로 선정되었을 때 중재인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재판정을 취소하기도 하였다.<sup>36)</sup> 따라서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중재인의 공정성 판단 기준에 당사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나 업무적 관련성이 있다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인이 SNS에 인종차별적 글을 공유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중재인의 인종차별적 표현이나 타인의 글을 공유한 것으로 중재인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중재판정을 취소한 법원 판례는 형성된 바 없다. 다만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중재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어 중재인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중재기관에서는 중재인의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을 사안에 대한 보다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축적하고 지속적인 중재인 교육을 통해 편파적일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점검과 확인 작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중재인의 엄격성을 수치화시킬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1) 김경배,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8, p.33.

32) 신균재, “한미간 중재인 문제로 인한 중재판정 취소의 소 비교분석”, 『무역학회지』, 제18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1, p.5.

33) UNCITRAL 모델중재법에 따르면 중재인으로 사건수행을 요청 받은 자는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고지할 것과 중재인이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당연히 되는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기피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4) 윤병철, “국제중재에서 중재인의 선임”, 『중재』, 제319호, 대한상사중재원, 2006, p.96.

35) 김경배, 『국제무역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2005, p.262.

36) 김경배, 앞의 논문, p.38.

추가로 국제중재 당사자가 중재인의 행위 등 사전 조사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중재인에게 주어진 고지의무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중재인에 대한 사전 조사와 해당 노력을 기울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sup>37)</sup> 그리고 사소한 이해관계나 중재판정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글이나 행동이 발견되었다면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기피 신청 시 단순한 추측이나 추정에 따른 주장은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중재기관 입장에서는 고지의무 대상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중재인 후보자들의 자기 검증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종차별과 같은 중립성과 공정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면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중재인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본 사건을 통해 중재기관은 중재인의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그와 유사한 직·간접적 행동 등은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사례처럼 중재판정이 중재인 문제로 인해 취소된다면 중재판정 절차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특히 CAS와 같은 특수 분야에 있는 중재기관은 중재판정의 취소로 피해를 보는 스포츠 선수 개인은 물론 해당 종목의 관련 단체와 협회, 더 나아가서는 국가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 결국 기관의 위상도 떨어지고 중재제도 자체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물론 중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중재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쉬운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중재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들 역시 중재인의 책임이나 면책에 관한 규정을 자세하게 규정으로 두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재기관은 위상 제고를 위해서라도 중재인 자격 박탈까지 가능한 기관 내부의 엄격한 잣대를 통한 중재인 관리가 오히려 더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관할권에 관한 내용이다. CAS의 중재절차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중재절차와 항소중재절차 및 임시중재절차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들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재에 있어 전제조건이라 말할 수 있는 중재합의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두 번째 사례는 분쟁해결조항의 내용 해석을 통해 관할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스위스 연방법원이 최종적으로 중재판정 취소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다. CAS에 항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중재합의가 있어야 하거나 해당 단체의 규정이나 규칙에 중재합의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관련된 계약서나 협약 규약 등에 명확한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전 별도의 합의를 해야만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중재합의가 존재하여도 중재기관의 명시가 모호하거나 중재 관할권이 불명확한 경우 중재판정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중재기관 또는 스

37) 중재절차가 개시되기 전 중재인에 대한 적극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으로 Duty of Curiosity가 있음.

스포츠 전담기구의 분쟁해결방법과 법원의 소송 절차가 중복되어 있다면 단순한 선택의 문제를 넘어 중재조항으로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야는 다르긴 하지만 국내에서도 중재합의에 법원 소송과 중재기관의 중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중재합의를 불인정한 판례도 있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와 같은 중재조항은 불완전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재절차와 법원의 소송절차가 서로 배타적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로 보고 반드시 전속적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중재의 필수적 요소가 소송절차를 배제하고 중재를 선택한다는 분명한 중재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효로 본다.<sup>38)</sup> 따라서 관련된 스포츠 전담기구나 기관에서는 표준중재조항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교육 등으로 앞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외 스포츠중재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전문 중재인 양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핑 등 국제적으로도 큰 쟁점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 도핑방지위원회는 물론 의사, 약사 등 관련된 전문가들이 소속된 협회나 단체들과 공동으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CAS와 같은 국제적인 분쟁해결기관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중재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인재풀(pool)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필요하다면 관련된 단체들로부터 지원받을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결국 스포츠 분야에 있어 공정한 중재 제도 정착의 발판이 될 것이며 스포츠 위상을 높이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

끝으로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스포츠 전문 중재인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라도 과거 논의된 바 있던 스포츠분쟁해결기관에 대한 설립 논의를 다시 시작할 시점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관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기관이나 기구의 존재는 분명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노력을 통해 국내 스포츠중재 역시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V. 결 론

오늘날 스포츠 분야의 국제적인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거대한 규모의 국제 경기에 국가를 대표한 수많은 선수가 해당 시기별로 출전도 하고 있다. 따라서 선수들의 올바른 스포츠정신이 언제나 높이 요구된다. 그런 면에서 본 연구에 제시된 첫 번째

38) 목영준, 전게서, p.91-92.



사례의 도핑 관련 문제는 스포츠 활동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자 선수 개인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만들 수 있어 WADA는 도핑 문제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한, CAS는 스포츠 전문 중재인들을 통해 접수된 스포츠 분쟁에 독립되고 공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협회 등에서 선수들을 규제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으로 CAS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스포츠 분쟁의 특성상 유형도 다양하고 시기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도 있어 중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중재기관은 중재인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중재인의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어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실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기관의 권위와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처럼 중재인의 인종차별적 태도나 행위로 공정한 중재판정을 내리는 데 지장을 초래하여 스위스 연방법원에서 중재판정의 취소를 결정하였다면 CAS는 중재인 관리에 더 엄격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재인을 선발하고 유지, 관리하는 일에 보다 현실적이고 분야 특성에 맞는 경험과 신뢰성 등의 기준을 두고 중재인을 선발해야 한다. 특히 사후관리 역시 반드시 시스템을 갖추고 진행해야 하며 추가적인 교육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명확한 중재조항을 두지 못한 상황에서 CAS 중재절차를 진행한다면 판정 취소의 위험이 있으므로 오히려 사후 중재합의를 유도하여 당사자 간 분명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관련된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 관련 협회나 조직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중재인 관련 지침서와 다양한 유형의 표준계약서 등을 만들어 수시로 배포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스포츠 분쟁의 공정한 중재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적의 전문 중재인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스포츠 전문 중재인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은 물론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스포츠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국제적인 대회에서 발생하는 스포츠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세계적으로 활동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전문 중재 기관을 설립하여 스포츠 분쟁을 처리해 나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스포츠 중재 위상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병근,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와 스포츠국제법의 과제 - 국제스포츠분쟁해결 제도를 중심으로 -”, 스포츠와 법 창간호, 2000.
- 김경배,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8.
- \_\_\_\_\_, 『국제무역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2005, p.262.
- 김대희, “국내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설치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4.
- 김상만, “2016 리우올림픽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최근 중재판정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김용길, “ADR을 활용한 스포츠 사건의 해결에 관한 고찰-중재제도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1.
- 김용섭,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독일 빙상선수 Claudia Pechstein의 도핑사례 분석을 겸하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6.
- 손창주, “스포츠분쟁해결기구로서의 스포츠중재재판소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8.
- 신군재, “한미간 중재인 문제로 인한 중재판정 취소의 소 비교분석”, 『무역학회지』, 제18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1.
-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p.131.
- 연기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비추어 본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의 역할과 과제”, 『스포츠와 법』, 통권 제1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 윤병철, “국제중재에서 중재인의 선임”, 『중재』, 제319호, 대한상사중재원, 2006.
- 전홍구, “스포츠중재의 필요성과 중재합의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6.
- 지철호, “ADR을 통한 스포츠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Arbitration Rules for the Olympic Games
- Swiss International Arbitration Decisions (2020) Challenge of a CAS arbitrator for inappropriate tweets, or the “duty of curiosity” revisited
- [https://www.swissarbitrationdecisions.com/atf-4a-318-2020?search=4A\\_318%2F2020](https://www.swissarbitrationdecisions.com/atf-4a-318-2020?search=4A_318%2F2020)

Swiss International Arbitration Decisions (2018) Exclusion of jurisdiction of state courts must be crystal clear

[https://www.swissarbitrationdecisions.com/atf-4a-432-2017?search=4A\\_432%2F2017](https://www.swissarbitrationdecisions.com/atf-4a-432-2017?search=4A_432%2F2017)

CAS 홈페이지 [https://www.tas-cas.org/fileadmin/user\\_upload/CAS\\_Statistics\\_2021.pdf](https://www.tas-cas.org/fileadmin/user_upload/CAS_Statistics_2021.pdf).

## ABSTRACT

### A Case Study on the Annulment of Arbitral Award in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Anna Molecka\*

Sung-Ryong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Swiss Federal Court's annulment of the arbitration Awards in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As international interest in the sports sector increases, related disputes are also increasing. Therefore, the role of CAS specializing in sports disputes is becoming very important. In particular, the Swiss federal court's annulment of the arbitral awards made by the CAS c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development of sports arbitration in the future.

Looking at the case analyzed in this study, first of all, it is about the partiality of the arbitrator. The court judged that the arbitrator posted and shared racist articles on SNS, which could be sufficiently biased. Next, it is about the uncertainty of the arbitration clause. The arbitral award was finally canceled due to the issue of whether the CAS could make an arbitral award with jurisdiction over a clause that includes both dispute resolution through a sports organization and dispute handling in a national cour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in the case of unclear arbitration provisions,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an arbitration agreement. In addition, in the case of unclear arbitration provisions,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a post-arbitration agreement. Finally, in order to revitalize sports arbitr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train professional arbitrators in Korea, support them to work internationally, and establish specialized arbitration institutions.

**Key Words** : CAS, Sport Arbitration, Jurisdiction, Arbitrator, impartiality

---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K21 project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4299990214398)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ommerce and Trade, Graduate School, Master Degree Student, anna0899@naver.com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ommerce and Trade, Associate Professor, jackie3@knu.ac.kr